

누가 최옥란 열사를 죽였는가?



김태균(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장)
(<http://cafe.daum.net/centerfordawnlight>)

열사의 약력

1. 1966년 출생
2. 1988년 장애문제연구회 '올림터' 창립회원
3. 1989년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정과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투쟁 활동
4. 1990년 장애인 노동권 말살음모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활동
5. 1991년 '침묵에서 함성으로' 수화 노래공연 주연
6. 1992년 장애인운동청년연합 활동
7. 정립회관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활동
8. 1993년 뇌성마비연구회 바롬 창립회원
9. 1997년 전국노점상연합 중구지부 회원
10. 1999년 민주노동당 발기인
11. 2001년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활동
12. 2001년 2월 오이도역 장애인용수직리프트 추락참사를 규탄 서울역 선로 점거
13. 150만원 벌금형
14. 2001년 12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15. 2002년 3월 26일 새벽 4시 심장마비로 운명



2001년 12월 3일, 뇌성마비 1급 중증여성장애인 최옥란 열사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서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빈곤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지고,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01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터무니없는 왜곡을 알리고, 빈곤계층의 생존권과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쟁취하기 위해 일주일간 텐트 농성을 진행했다.

26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 이걸 어느 TV프로그램에서 생존게임을 벌이는 이야기가 아니다. 농성에 들어가기 전, 최옥란 열사가 정부로부터 한 달 생활비로 지급 받았던 생계급여의 액수가 26만원이었다. 청계천 도깨비 시장에서 노점을 하며 어렵지만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왔던 최옥란 열사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노점과 수급권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의료비 때문에 노점을 포기하고 수급권을 선택한 최옥란 열사에게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한 달 생계급여로 26만원을 지급했다.

명동성당 농성 당시 열사의 모습





농성이후 약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26
만원만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아들 양
육권이 법원 판결에 의해 박탈되고,
수급권마저 빼앗기면서 2002년 2월
경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목
숨을 건져 치료를 받던 중 3월 26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하
셨다.



최옥란 열사 추모제



2001년 12월 열사께서 명동성당 농성에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

구걸을 하더라도 치사해서 수급권을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총리에
게 26만원을 반납하러 갑니다.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같이 가난
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
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최옥란 열사의 말씀 1

- "제가 추운 겨울에 텐트농성을 결심한 것은 일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최저생계비 아니 생존자체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때문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저에게 노점과 수급권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 "김대중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의료비 때문에 노점을 포기하고 수급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최옥란 열사 추모제

최옥란 열사의 말씀 2

- "지불해야 하는 약값만 해도 26만원이 넘는데, 아파트 관리비만도 16만원인데, 도대체 나보고 26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러면서도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것이냐?"
- "도대체 약값도 안 되는 생계비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최옥란 열사의 말씀 3

- "최저생계비가 워낙 낮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불되는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의료비도 비급여가 많아 저 같은 중증장애인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2011년
최옥란 열사 추모제

사람을 죽이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자마자 시행시보다 생계급여에 비관한 수급자 2명이 비관 자살함.
- 2001년 12월 최옥란 열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규탄하며 명동성당 농성 돌입
- 2002년 3월 26일 04시 최옥란 열사 운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 2000년부터 시행
- 수급 당사자를 ‘생활보호대상’ 이라 칭했던 것에서 ‘수급권자’ 로 명명하여 권리성을 부여하고, 나이·성별·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규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7개의 현금·현물 급여를 보장
- 그러나 문제는 턱없이 낮은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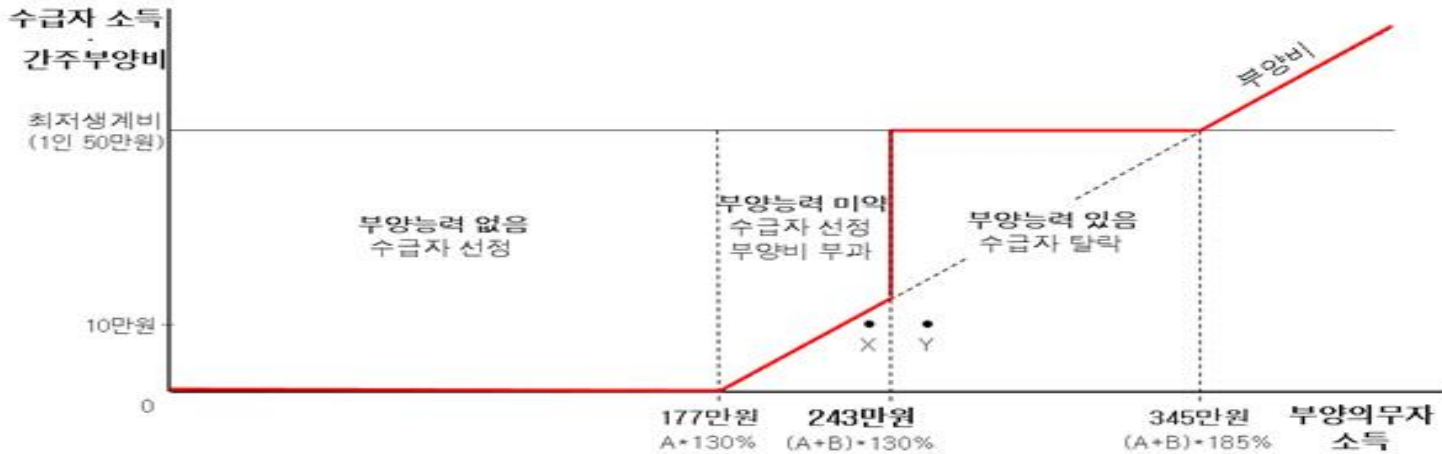
2012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9.1 보건복지부 고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현금급여 (원/월)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최저생계비 기준선이 낮다 보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 되기 어렵고 수급자가 되어도 급여가 법에서 규정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의 한계



* 자료: 보건복지부

- 기초법은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
- 부양의무자 기준 사각지대 인구가 103만 명에 달한다(2009, 보건사회연구원).
-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지만,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존재 자체로 사각지대는 필연적으로 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근로소득이 발생되면 급여총액에서 추가분을 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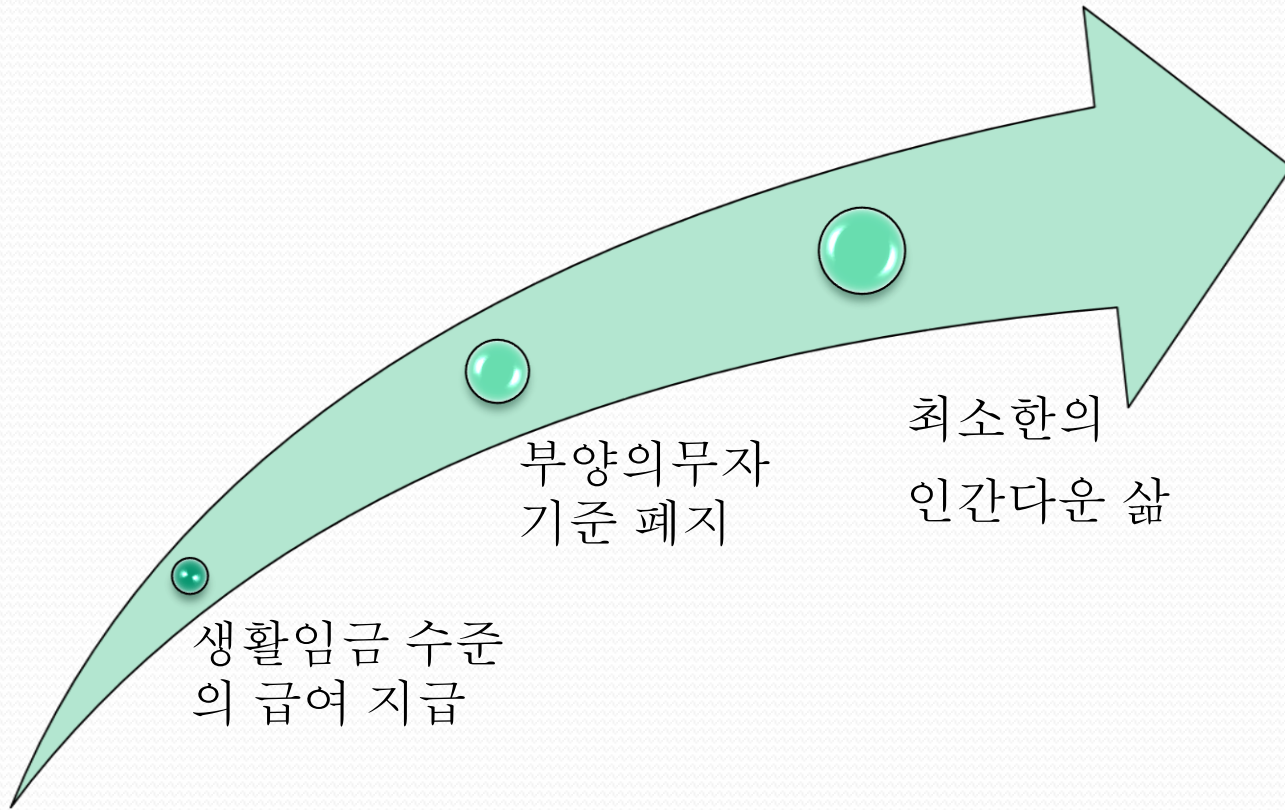
- 기초법은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하며 자립·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하지만 수급자가 되면 일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급여 총액에서 추가 소득분이 깎여 결국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급여가 똑같은 보충급여 방식을 적용 받는다.
- 오히려 기초법이 실질적인 생활 개선 방안 없이 더욱더 불안정한 일자리로 수급자를 내모는 격이다.
- 기초법이 오히려 빈곤의 감옥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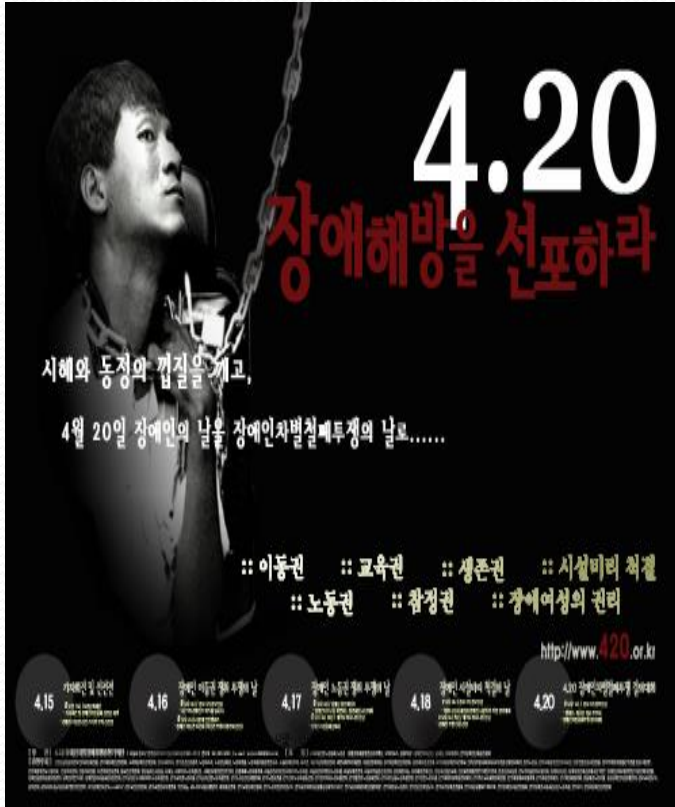
“저희들은 부산에 살고 있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6년 동안 해마다 한 번씩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재산과 부양의무자라는 이유에 걸려 안 됐습니다.....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40살이 된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를 먹여 살리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일도 못하는 몸뚱이, 자식 된 도리도 형제간에 우애도 지킬 수 없는 삶. 평범한 삶도 영위할 수 없는 삶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과 형제간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0년 12월 2일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로 인한 피해당사자 38명 중 정선옥 씨의 당시 민원 내용 일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열사의 뜻 이어 받아 인간다운 삶 쟁취하자



제5회 전국장애인대회 최옥란열사 7주기 장애해방열사합동추모제

장애인 생존권 9대 요구안

1. 탈시설-주거권을 전면 보장하라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라
3. 장애인연금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4. 활동보조 권리를 보장하라
5.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7.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전국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8.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9.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및 의료정책 제도를 개선하라

* 전국장애인대회 는 칼라TV 및 함께걸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 됩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일시 | 2009년 3월 26일 늦은 2시 추모제 : 5시 장소 | 보건복지부 앞
문의 | 02-738-7709 Homepage | www.420.or.kr



최옥란 열사 10주년 추모제

2012년 3월 26일(월) 13시 000

수원 새벽빛은 수원역에 11시 집결

수고하셨습니다.

아자, 아자, 하자구여